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장애인·국가유공자·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일정비율 할인하는 것입니다.

□ 입법형식으로 붙때

- 별표를 두는 이유는 본문으로 규정하기에 내용이 복잡할 경우 법문의
편이성, 간결성, 정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본문의 위임이 있을 때 별표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감면
대상을 정한 후 별표에 내용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조례안과 같이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할인할수도 있으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할인대상의 범위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은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최대 50%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안과 같이 20%~40%로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을 두어 할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우대자에 대한 할인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는 첨부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 1. 관련법규

2. 서울시 및 자치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3. 수정의견

2005. 9. 5

보고자 : 김찬재

【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법

-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35조(공공시설)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86조(고궁등의 이용보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후문 생략)
3. 국가유공자중 예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10과 같다.

【 별표10 】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공원	100분의 100
2.-8.(생략)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장애인복지법

- 제27조(경제적부담의 경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 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 별표2 】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2.~4.(생략)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100분의 50

□ 사회복지사업법

-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 제26조(경로우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등)①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1과 같다.

【 별표1 】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일호, 비둘기호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농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고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이상

서울시 및 자치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구 분	감 면 내 용							근 거
	장애인	국가 유공자	경로 우대자	생물 보호자	무의탁 노인	모자 가정	기타	
서울시	50%		50%	30%	30%			조례
종로구	50%	50%	20%					시설공단방침
중구			없음					
용산구	40%		40%					시설공단방침
성동구	50%	50%		50% (30%)	(30%)	(30%)		시설공단방침 (조례)
동대문구	50% (동반자 포함)	30%		30%				조례
종량구	50% (동반자 포함)	50%		30%				조례
성북구	50%	50% (배우자, 자녀포함)	20%					조례
강북구	50%	50%	20%					시설공단방침
도봉구	30%	30%	30%					시설공단방침
노원구	50%	30%		30%				구청장고시
은평구	50%	50%					13세이하 50%	조례
서대문구	50%							관장방침
마포구	50%							조례
양천구	50%	50%	30%					시설공단방침
강서구	50%	50%	50%	30%				조례
구로구	50%	50%		30%				관장방침
금천구	50% (보호자 1인포함)	30%	50%	30%				조례

구 분	감 연 내 용							근 거
	장애인	국·기 유공자	경로 우대자	생활 보호자	우의탁 노인	모자 가정	기타	
광진구	50%	50%	50%	50%				조례
등작구	50% (보호자 1인포함)	50% (배우자 포함)						시설공단방침
관악구	30%			30%	30%	30%		조례
서초구	50%							관장방침
강남구				30%	30%			구청장고시
송파구	30%	50% (가족포함)	30%	30%				조례
강동구		50% 이내	50% 이내	50% 이내				조례
영등포구 (조례안)	20% ~40%	50%	20%	30%				